

---

## Policy and Law Report \_Vol.79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 3.29 ~ 4.4) -

April 5, 2021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접수현황 및 입법예고 현황, 정부부처 및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국회 주간 일정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일정

#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p>• <b>「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b></p> <p>기획재정부는 「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1/4분기 경제상황 점검 및 2/4분기 대응방향"과 "110조 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방안"을 상정 논의함.</p> <p>주요 내용으로는 ① 경제동향 및 경제중앙대책본부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 한국판 뉴딜 분과별 점검·보고, ③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2/4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계획, ④ 2021년 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지원방안, ⑤ 정책형 뉴딜펀드 추진현황 및 뉴딜 인프라펀드 운영방안, ⑥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 ⑦ 산업단지,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 등이 논의됨.</p>	2021-03-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 <b>「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수립</b></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확정함.</p> <p>주요 내용으로는 ①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 개발 전략 제시, ②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R&amp;D사업 기획·착수, ③ 新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집중지원 체계 마련, ④ 민간이 주체가 되는 저탄소화 기술혁신 촉진, ⑤ 기술혁신이 지속되는 연구역량·기반 강화 등이 있음</p>	2021-04-01
산업통상자원부	<p>• <b>2021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등 사업공고 및 접수 실시</b></p> <p>산업통상자원부는 3/29(월) 2021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을 공고하고, 3/31(수)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힘.</p> <p>주요 내용으로는 ① 20년 대비 25%(1,125억원) 증가한 총 5,610억원 지원, ② 산단 태양광 지원 대상 확대, 도심 태양광 사업 신설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③ 지역주민과 발전수익 공유 확대를 위해 장기 저리 주민참여자금 지원 등이 있음</p>	2021-03-29

부처	내용	일시
	<p>• <b>「산업 디지털전환 확산 전략(디지털 BIG-PUSH)」 발표 - 연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추진</b></p> <p>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8월,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성장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4/1(목) 산업 현장 곳곳으로 디지털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 후속 확산 전략을 발표함.</p> <p>산업 디지털 전환을 준비⇒도입⇒정착⇒확산⇒고도화 5단계로 구분하여 2025년까지 업종 평균은 디지털 전환 수준을 도입 단계, 선도 30%는 확산단계 진입을 추진하기로 하며, 이를 위해 업종, 기업규모, 공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함.</p> <p>주요 내용으로는 ① (업종) 업종별 맞춤형 전략 시리즈 발표, 수준별 프로젝트 추진, ② (기업) 기업DX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산업데이터 플랫폼 확대, ③ (공간) 협업지원센터 확대, 지역 디지털전환 거점 마련, 산업분야 공공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연내 제정하여 산업데이터 활용과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키로 함</p>	2021-04-01
금융위원회	<p>• <b>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구축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능적합성 심사 및 보안취약점 점검 추진</b></p> <p>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금년 8/4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및 중계기관별 준비 현황, 주요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제공자 등의 준비 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함.</p> <p>주요 내용으로는 ① 마이데이터 API 및 서비스의 개발·테스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를 금융보안원 내 구축, ② 안전하고 원활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기능적합성 심사 추진, ③ 「알고하는 동의」를 반영한 전송요구 양식 등 주요 쟁점들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TF도 4월 중으로 신용정보원이 운영할 계획 등이 있음</p>	2021-04-01

##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제안 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b></li> </ul> <p>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전기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2021-03-30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b></li> </ul> <p>1994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일정한 포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p>	2021-04-01
공정거래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li> </ul> <p>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관해서는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규제의 재검토를 하도록 하되,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이나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8가지 규제 사항에 관해서는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p>	2021-03-31
특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디자인보호법 시행령」</b></li> </ul> <p>비밀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경우 출원인이 지정한 기간 동안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를 등록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지 않도록 하고, 특허심판원에서 각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심판장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p>	2021-03-30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제안일자
고용노동부	<p>• <b>「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p> <p>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을 근로자의 신청 시 체당금 수급계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외에도 체당금 지급범위에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추가, 근로자 생계비 용자 신설 등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사항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 ①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사항에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추가 등(안 제10조제1항제3호), ② 체당금 수급계좌 관련 위임사항 등 규정(안 제18조 신설), ③ 권한의 위임·위탁 사항에 근로자 생계비 용자 및 체당금 수급계좌 관련 내용 추가(안 제24조제2항제1의2호, 제3의2호) 등이 있음</p>	2021-04-02
금융위원회	<p>• <b>「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p> <p>최근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발표해 온 대책에 따른 제도 개선 수요를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p> <p>주요 내용으로는 ① 정보교류 차단제도 관련 위임사항 반영(안 제50조), ②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제도 개선(안 제45조 및 제46조), ③ 금융위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보고받은 경영·부수업무에 대한 공고방법·절차 규정(안 제44조) 등이 있음</p>	2021-03-29
금융위원회	<p>• <b>「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p> <p>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대신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정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 ①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 거래(안 제3조의2), ②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기관(안 제3조의3), ③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의 자금 차입 방법(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 ④ 고유식별번호 처리근거 마련(안 제24조의6제1항제19호), ⑤ 매입계약 해제 요건 및 절차 구체화(안 제24조의7) 등이 있음</p>	2021-03-31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 <b>「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5인)」</b></p> <p>무료 구독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별도 계약의 필요성을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도록 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유료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가 철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17조제1항제4호,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24조의3 신설 등).</p>	2021-03-29
정무 위원회	<p>• <b>「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3인)」</b></p> <p>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통적 통신판매를 전제로 설계되어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화된 거래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규율체계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별도 규율체계 수립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중국, 일본, EU 등에서는 이를 위한 입법도 본격화되고 있음. 이에 대폭 변화된 시장 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상거래법 체계 및 용어 재정비 (안 제2조)</li> <li>▷ 인접지역 판매 거래에 대한 적용범위 수정 (안 제3조)</li> <li>▷ 역외적용 규정 신설 (안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직구·구매대행 활성화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명시적 규정 부재로 해외플랫폼에 대한 법집행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므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li> </ul> </li> <li>▷ 주문제작 상품 청약철회 조건 명확화 (안 제12조제2항제6호)</li> <li>▷ 정보의 투명성 확보조치 신설 (안 제16조)</li> <li>▷ 맞춤형 광고 등 정보이용 시 고지의무 강화 (안 제18조)</li> <li>▷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 (안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사업자의 국내법 준수 및 소비자 분쟁해결 업무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해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자상거래사업자에 대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함</li> </ul> </li> <li>▷ 위해방지 조치의무 신설 (안 제20조)</li> <li>▷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확대 (안 제24조)</li> </ul>	2021-03-3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외관책임 강화 (안 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영업 및 입점업체 영업 미구분 · 표시, 자신 명의로 표시 · 광고 · 공급 · 계약서 교부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계약당사자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고의 · 과실로 소비자 손해 발생 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li> </ul> </li> <li>▷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안 제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간 거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신원정보 확인 및 분쟁발생 시 분쟁 해결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결제대금예치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이를 소비자 등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함.</li> </ul> </li> <li>▷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35조~제48조)</li> <li>▷ 동의의결제도 도입 (안 제57조~제6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상거래사업자의 '허위 · 과장 · 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li> </ul> </li> </ul>	
	<p>• <b>「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5인)」</b></p>	
<p>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위원회</p>	<p>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하고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며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1조,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 신설, 제445조 등).</p> <p>• <b>「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0인)」</b></p> <p>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성 확보 현황 자료제출 의무화, 트래픽 양(量)측정 투명성 확보, 서비스 안정성 관련 국내대리인의 업무범위 명확화 등이 필요하나, 대통령령에서 규율하기에는 위임입법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이 긴히 요구되는 상황임.</p> <p>이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트래픽 양(量)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을 추가하여 이용자가 더욱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22조7제2항 · 제3항 및 제22조의8제1항제3호 신설 등).</p>	<p>2021-03-31</p> <p>2021-04-01</p>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p>• 「<b>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0인)</b>」</p> <p>한국가스안전공사 「LPG자동차 셀프충전 도입 타당성 연구」 보고서('20)에 따르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가와 미국, 호주 등에서는 LPG셀프충전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LPG셀프충전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마련하고 실증테스트를 통해 LPG셀프충전 도입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p> <p>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폐업을 최소화시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p>	2021-03-29
환경노동 위원회	<p>• 「<b>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b>」</p> <p>현행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사용자의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제도임. 그런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유연근무제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졌고 일부 기업 등에서는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관련 근거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및 제114조).</p>	2021-03-29

### 3. 국회 주간 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4/9(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33호 발간	
국회도서관	4/6(화)	현안입법 알리기 - 택배서비스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산업 자원법 제정	
	4/8(목) 11:30	제11차 「밥 대신 지식강좌」 실시 - 주제: 인공지능과 사서 - 강사: 이수영(미국 텍사스대학교 정보대학 교수)	온라인 개최
	4/9(금) ~	「인공지능과 예술 : 딥러닝이 그린 패턴」 전시회 개최	국회도서관 2층
	4/20(화) 15:00	제14차 「AI와 국회포럼」 개최 - 주제: 인공지능과 미래행정 - 발제자: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온라인 개최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 예산정책처	4/5(월)	「NABO FOCUS」 제31호 발간 - 주제: 2020년 합계출산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4월중	현안보고서 발간 -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우리나라의 재정수지와 잠재성장률	
	4월중	분야별 전문지 발간 - 「NABO 경제 산업동향&이슈」 4월호 발간 - 「NABO 재정동향&이슈」 021년 제1호 발간	
국회 입법조사처	4/5(월) 10:00	「전문가 간담회」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보호 - 발표: 이창범 교수(동국대학교)	비대면 화상회의
	4/9(금) 10:00	「전문가 간담회」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 - 발표: 신신애 팀장(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비대면 화상회의
	주중	보고서(이슈와 논점) 발간 - 공공기관의 부채 현황과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4/30(금) 10:00	「전문가 간담회」 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 - 이진규 CPO(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국회 미래연구원	4/15(목)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6호 발간 -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	
	4/22(목) 13:30	제1회 국회미래포럼 개최 - 주제 : “지역소멸 위기와 대안: 지방대학의 미래” - 내용 : (발제) 이소영 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 (좌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등	국회 회의실

#### 4. 국회의원실 주최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

일자	제목	주최	장소
4/5(월) 14:00	탄소중립시대 발전공기업의 역할과 미래	이학영 의원실, 대한전기협회	온라인 생중계
4/15(목) 14:00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소병훈 의원실,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스카우트 연맹회관 1층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서예지 | 소속변호사 T. 02-316-1787 E. yjiseo@shinkim.com
- 문응필 |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 최유리 |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소속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